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교육시설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34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교육시설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태호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0.
3. 회부연월일 : 2025. 11. 2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시설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를 받거나, 학교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 및 폐기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교육시설 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20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교육시설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시설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감독기관과 교육시설의 장에게 공사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해당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며, 교육시설이용자에게 공사와 관련한 위험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제20조의2(교육시설 공사 안전관리)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시행자 등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②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p> <p>③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공사의 완공 전까지 교육시설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공사 일정을 게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요청,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거나 학교 근처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sup>1)</sup>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교육시설 공사 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 및 폐기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sup>2)</sup>

- 현행 법령을 보면,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공사 현장에서의 소음·진동 방지와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시설 공사로 교육활동이 방해되거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부일보, 「부실 가림막에 소음 광광... 아찔한 인천 구월동 학교 공사현장」, 2024.11.25.

## [관련 규정]

| 법률명                   | 조문 내용                                                                                                                                                                                                                            |
|-----------------------|----------------------------------------------------------------------------------------------------------------------------------------------------------------------------------------------------------------------------------|
| 「소음진동관리법」             |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b> 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b>시·도지사</b> 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b>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b> 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

□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만 주어져 있어 학교현장에서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의 의견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시설 공사의 직접적 당사자인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sup>3)</sup>에게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 관계자에게 직접적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현행법은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과 안정적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규율체계를 갖추므로써,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폐기물 등 생활형·환경적 위험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데,

개정안은 교육당사자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20조의2제3항4)에서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육시설 공사와 관련한 위험 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해당 표지판의 설치 등 안전관리 책임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sup>5)</sup> 등에 따라 공사의 시행자 등 공사관계인에게 있음에도 교육시설의 장에게 해당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4) 안 제20조의2(교육시설 공사 안전관리) ③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공사의 완공 전까지 교육시설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공사 일정을 게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요청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은 교육시설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현장 안전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주체가 아닌 교육시설의 장에게 표지  
판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의 책임 구조와 부합하지 않  
은 측면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88 |